



---

-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안)**

---

2011. 1.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목 차

I. 추진배경 .....	1
II. 추진현황 및 문제점 .....	2
III. 기본 방향 .....	5
IV. 중점 추진 과제 .....	6
1.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자치 활성화 .....	6
2.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	9
3.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 .....	12
V. 향후 추진 계획 .....	15
붙임 1. 학교생활규정 관련 외국사례 .....	16
2. 설명자료[Q&A] .....	19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32

## □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필요성 대두

- 최근 학생들의 심각한 욕설문화, 졸업식 알몸뒤풀이, 로우킥 폭력, 교사의 지도 불응, 교사폭행·성희롱 등 인성 부재의 사안 증가
  - 이론 중심이 아닌 생활 속에서 체득하는 언어 예절, 타인 존중, 자기 절제 등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필요성 대두

## □ 준법의식, 공공의식 배양교육의 필요성 증대

- G20 정상회의 개최로 국격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 선진사회가 요구하는 타인을 배려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 시민 의식과 공공질서에 대한 준법정신을 배우는 기회 부족
- < 국내·외 초등학생 교실학습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결과(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

- ▶ 교실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한다.(‘그렇다’고 답한 비율) 영국(60.6%), 프랑스(60.0%), 일본(28.7%), 한국(15.9%)
- ▶ 교실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실천한다.(‘그렇다’고 답한 비율) 프랑스(63.0%), 영국(54.3%), 일본(20.0%), 한국(18.4%)

## □ 문제행동 및 위기학생 증가에 대응하는 생활지도 방법 전환 필요

- 시대 변화에 따라 기존의 통제·규제 위주의 학생지도에서 벗어나 학생을 인격적 주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필요
  - 학교 생활규정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제정하고 자율적으로 지켜 나가는 자율·책임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
- 180여만 명의 위기학생(추정치) 및 문제행동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학적·체계적인 진단 및 상담 등 지원 중심의 생활지도로 전환 필요

< ‘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정책 연구(교과부, 2009) >

- ▶ 학교급별 위기학생 현황 : 초등학교(551,090명, 16.2%), 중학교(451,984명, 29.2%), 인문계고(476,618명, 31.8%), 전문계고(282,992명, 42.8%)
- ▶ 위기수준별 위기학생 현황 : 취약학생(89,365명), 준위기학생(1,452,196명), 고위기 학생(335,123명)

## II

##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 추진 경과

- 학칙 제·개정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 폐지 개정 법률안 상정('08.11)
-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및 토론회 개최('10.8.18)
  - 학생의 권리와 학교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 정책연구 책임자 : 교육법연구팀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 교원 및 학부모 단체 순회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10.9~)
- 정책연구팀, 현장교원,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 협의회('10.10.7)
- 체벌 대체지도 방안 등 시·도생활지도 담당장학관 회의('10.10.26, '11.1.6)
- 학생과 교사의 권리 및 책무 신장 방안에 대한 시·도부교육감회의('10.12.3, '11.1.12)
- 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 관련 학교현장 안정화를 위한 시·도교육감 회의('10.10.29)
  - ※ (서울)체벌 금지 시행('10.9), (경기)학생인권조례 제정 공포('10.10)
- 학교문화 선진화 현장 전문가 TF 구성·운영('10.11~)
-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10.12.29)
  - ※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주제 발표 :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 □ 인성교육 추진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감성과 소통 중심의 학생 상담 활성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인성교육 강화	자율과 책임중심의 학교문화 기반 구축
▶ Wee 프로젝트 추진 ▶ 그린마일리지(상·벌점)운영	▶ 2009개정교육과정 추진 ▶ 창의적체험활동 도입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학교문화선도학교 150교 운영

- ※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대책 수립('07)
- ※ 체벌 대체 「상·벌점제 디지털시스템」 도입('08)
- ※ 체험과 실천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10)
- ※ 체벌금지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정비 학교 현황

구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율	27.7%	52.16%	51.0%	53.1%	69.9%	78.1%	80.0%
학교수	2,845	5,369	5,458	5,706	7,637	8,803	8,992

## □ 문제점

### ① 학생 의식 변화와 교사의 지도방식의 괴리

○ 개방화·다양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학생들의 문화와 기성세대 간의 문화지체로 소통 곤란

- 체벌, 언어 폭력, 강압적 태도 등 비교육적인 훈육·훈계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학생 간 쌍방향으로 소통·공감하는 학교 문화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08.2.28) : 체벌(뺨때리기 등)은 학생지도 방법과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인격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 청소년 세대의 변천 과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 ② 폭력적인 청소년 문화 만연

○ 졸업식 알몸뒤풀이 유행, 습관적인 욕설 사용 등 건전한 학생 문화 실종

- 입학식, 졸업식, 학생 축제 등이 학교특색과 전통으로 승화되지 못한 채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

#### < 졸업식 알몸 뒤풀이 유형 >

- ▶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 ▶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 ▶ 학생의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상태로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강제 추행, 강요)
- ▶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학생들의 욕설문화는 2000년 초고속 인터넷 활성화 이후, PC방, 채팅문화, 휴대전화 유행 등으로 보편화, 습관화되면서 크게 증가

※ 학생들이 느끼는 학생 언어 사용의 문제점으로 욕설(50.5%), 언어폭력(33.4%), 은어(9.2%), 통신언어(5.2%) 등의 순으로 인식(한국교육개발원, '10.11)

※ 학생들 사이에 '욕애플리케이션', '욕배틀(욕게임)' 등이 청소년 문화로 확산

### ③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

○ 교사의 지도 불응에 대한 교사 욕설·폭행 등 교실붕괴 초래

-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작용

#### < 최근 3년간 교사에 대한 폭력관련 증가추이 >

- ▶ (가해자 형태) 학부모에 의한 형태는 감소되고 있으나, 학생에 의한 폭력 증가
  - ※ 학생 비중 증가추이 ('08년 : 56.8% → '09년 : 73.6% → '10년. 9월 : 77.9%),  
가해자 대부분이 중·고등학생
- ▶ (폭력 형태) 과거 폭행에서 언어적 폭력형태인 헐박이 가파르게 상승
  - ※ 헐박비중 증가추이('08년 : 52.3% → '09년 : 71.7% → '10년 : 85.3%)

※ 영국의 교사 3분의 2는 교실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학생의 부정적인 품행이라고 응답, 영국 교육부는 노터치(No-Touch) 규정을 완화하고 학교의 재량권 확대 추진(영국 교육부 발행 교육백서 2010.12)

#### < 체벌금지 이후 교실붕괴 관련 언론보도 동향 >

일자	주요 보도 내용	비고
'10. 11. 12	• 순천 A중, 여교사가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는 여중생의 뒷머리를 때리자 “왜 학생인권을 무시하느냐”며 머리채를 잡는 몸싸움 벌임	데일리안
'10. 12. 20	• 인터넷사이트에 '개념없는 중딩'이라는 제목의 1분 35초 길이 동영상 업로드. 교사에게 반말로 '첫키스', '첫경험', '초경'이 언제였는지 묻는 충격적 장면 수록 • 경기성남 모초교 5학년(남)이 싸우는 것을 말리는 교사의 머리채를 흔들고 밀침	서울신문
'10. 12. 20	• 강원강릉 C중, 남학생이 지각을 나무라는 여교사를 밀치고 목 조르고 침 뱉은 뒤 도주	동아일보
'10. 12. 22	• “뺨해도 못때려”, ‘선생님 놀리기 유행, 교사가 판서 시 학생들이 춤추며 교사 놀림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교사 약 올리기 방법 공유	조선일보
'10. 12. 25	• 모학교, 여자 담임교사의 배를 발로 차고 ‘때리려면 때려봐. 신고할테니깐’ 이라고 소리치며 도망감(교총, 체벌금지로 인한 학교현장의 고충사례 수집 자료)	세계일보

○ 체벌금지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체벌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상존

※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 : '06년(72.0%) → '08년(63.8%) → '10년(67.7%)

< 전국 19 ~ 65세 성인남녀 1,500명 대상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10.11.16)>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체벌 대체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 적합성 미흡 등 지적

\* (경기 성남교육지원청)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적 지도 방안 : '10.10

\* (서울)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 '10.11

Ⅲ

**기본 방향**

비전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즐거운 학교**



목표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추진 과제

<b>과제 1</b>	<b>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자치 활성화</b>
<b>과제 2</b>	<b>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b>
<b>과제 3</b>	<b>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b>

추진 방향

<b>학교문화의 패러다임 전환</b>		
구분	과거의 학교문화	선진화된 학교문화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의 타율적, 수동적 지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행사의 소극적 참여</li> </ul> </li> <li>○ 학교생활규정 제정 시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규칙 경시 풍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의 자율적, 창의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행사의 주도적 참여</li> </ul> </li> <li>○ 학교생활규정 제정 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규칙 준수 및 책임감 제고</li> </ul> </li> </ul>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제·규제 위주의 학생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과의 소통·공감 단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과의 소통·공감 확대</li> </ul> </li> </ul>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 참여 기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주인의식 부족</li> <li>- 학교에 대한 부담감, 참여에 소극적</li> </ul> </li> <li>○ 지역사회의 관심 및 참여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 참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인의식 및 책임의식 제고</li> <li>- 학부모 상담제 도입 및 서포터단 운영</li> </ul> </li> <li>○ 지역사회의 참여 및 책임 확대</li> </ul>

## 1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자치 활성화

학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확대	+	학생 의견수렴 상시 체제 구축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의견 수렴 제도화</li> <li>▪ '학칙 준수 서약식' 권장</li> <li>▪ 상·벌점제 운영 내실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급회의 시간 확보</li> <li>▪ 불만 신고·처리 상시 체제구축</li> <li>▪ 학생 옴부즈맨 제도 운영 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운영 자율권 부여</li> <li>▪ 학교문화 100대 우수교 선정</li> <li>▪ 학생자치법정 내실화</li> </ul>

## □ 학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확대

-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관한 학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의견 수렴 제도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 기재사항)에 조항 신설 추진
  - 두발·용의, 상·벌점 항목 등은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
- 학생 의견수렴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생대표가 의견 제시 및 건의 가능(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10.12)
  - ※ 학생의견 반영 절차(예시) : 학급회의를 통한 학급의견 마련 → 학생회 안건 제출 → 교사·학부모·학생 참여 토론회·공청회 개최 → 학칙 제·개정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전통 확립

- 입학식 등 학교 행사를 통해 '학칙 준수 서약식' 개최 권장
  -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서약식 등을 통한 준법의식 제고
  - 학칙 범위 내에서 학급단위의 규칙(학급헌장 등) 제정·운영 권장
- 학칙에 대한 교원 연수 정례화(학기당 1회 이상)
  - 학칙 내용 숙지 및 공정한 적용, 문제행동 대응방안 등 관련 연수를 통하여 학생지도에 대한 효용성 제고

-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
  - 학부모가 학칙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 및 학칙 안내자료 제공
- 상·별점제(그린 마일리지제)의 내실 있는 운영
  - 모든 교사들이 공정·형평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에 대한 교직원 연수 강화
  - 긍정적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별점 차감제' 확대
    - ※ 상·별점제 운영 현황 : ('09) 1,858교 → ('10) 4,444교

**< 교외 별점 차감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고등학교) >**

- ▶ 가족 등반, 사제동행 등반 후 체험 보고서 제출 시 별점을 차감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여 2개월 동안 152명의 참여 유도
  - ※ 기타 예시 : 또래 상담, 좋아하는 교사와의 상담, 캠페인 참여, 사제동행 등

**□ 학생 의견수렴 상시 체제 구축**

-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에 **학급 자치활동 및 회의 시간 확보**
  - 학급단위에서 수렴된 의견이 학생회 등 학교단위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
    - ※ 학생자치활동 및 학급회의 매뉴얼 개발 보급 : '11. 2
- **학생 불만사항 신고·처리 상시 체제 구축**
  - 학생 출입이 잦은 곳에 학생의 불편·불만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함 설치(교내신문고, 건의함, 우체통 등)
    - ※ ○○중학교의 빨간 우체통 : 학생 출입이 잦은 곳에 빨간 우체통을 설치하여, 학생의 불편·불만 사항에 대하여 편지를 쓰도록 하고 자치 위원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스템
- 학교생활 불편사항을 모니터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학생 옴부즈맨 제도 운영 권장**
  - 학생들과의 소통 확대를 통한 학교생활의 만족도 제고
    - ※ 노르웨이의 '어린이 옴부즈맨' 제도 : 학생 모니터단 구성 ⇒ 정기적인 모니터 내용 접수 ⇒ 학교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학교장이 회신(반영하지 않을 경우 타당한 이유 설명)

##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 단위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 학생회 회의실 등 활동 공간 제공 및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권 부여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모든 학생에게 리더십 교육 기회 제공
  - ※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수 시간과 내용을 기록하여 입학사정관제 전형 활용

### ○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지원 확대

- 졸업·입학식, 축제 등 학생들이 기획·운영하는 **학교행사 활성화**
  - ※ 추진계획 : ('10) 150교 → ('11) 300교(150개는 학생자치활동\* 선도학교로 지정)
    - \* 학생자치활동 영역 : 학교생활규정 운영, 학생자치법정,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나눔문화, 청소년 언어순화, 멘토링 활성화, 학교축제 등
- 풍물, 오케스트라, 연극, 밴드, 스포츠, 연구·탐구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교전통 세우기 프로젝트’ 추진**
  - ※ 예술 소외 및 학교폭력이 많은 지역의 학교에 예술적 인성 함양을 위하여 학생 오케스트라(한국형 엘시스테마) 지원 : ('11) 10~15교 → ('12) 40교
- 매년 **학교문화 100대 우수학교 공모전 개최**
  - ※ 인성교육, 학칙 준수 생활지도, 동아리 활동 등 학교문화 우수교 선발 및 일반화
  -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전국단위에서 최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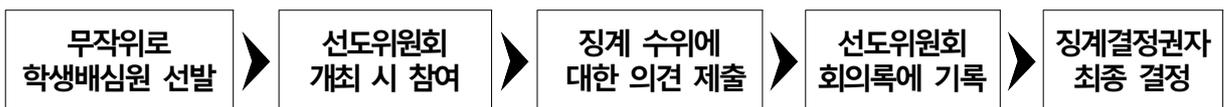
### ○ 학생자치법정 내실화

- 변론이 필요하거나 교내봉사 수준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상·벌점제와 연계하여 실시
  - ※ 시도교육청의 학생자치법정 추진 계획 : ('10) 1,551교 → ('11) 3,000교
  - ※ 법무부 지정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현황 : ('09) 35교 → ('10) 49교 → ('11) 100교

#### < 학생자치법정 우수 사례('09, 행신고등학교) >

- ▶ 행신 로스쿨 운영 : 과벌점자 학생들이 선임할 수 있도록 자체 변호인단 조직
- ▶ 푸른교실 제도 운영 : 과벌점자 학생들의 벌점 상쇄 제도
- ▶ 재판 과정 생중계 : 매 학기 마지막 재판을 생중계하여 홍보 및 학생 참여 유도
- ▶ 실무지원팀 모니터링제 : 재판준비, 촬영, 홍보에 관심 있는 학생을 자체 선발·운영

- **‘학생배심원 참여형 선도위원회’ 시범운영 실시**(학교문화선도학교에 포함)



- ※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11. 2) 및 우수사례 보급('12. 2)

## 2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제고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지도 강화	교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칙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 정비</li> <li>· 체벌대체 지도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정지 및 대체교육 제공</li> <li>· 문제행동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지도 직무연수 강화</li> <li>· 긴급상황 지원시스템 구축</li> </ul>

### □ 학칙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자율성 제고

#### ○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정비

- 학칙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 폐지 및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 :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08 정부 입법안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밑줄 친 부분 삭제)

- 두발·복장, 핸드폰, 소지품, 표현의 자유 등 생활규정에 대한 단위학교의 재량권 확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개정 추진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련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 (밑줄 친 부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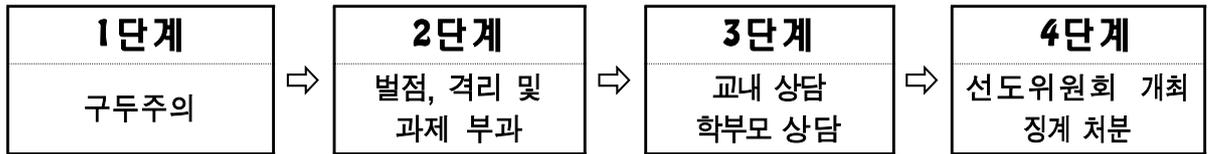
#### ○ 체벌 대체 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

-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은 허용

※ 간접적 체벌 :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

- 간접적 체벌은 학교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

- 기타 훈계·훈육 지도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가급적 단계적으로 적용



※ 훈계·훈육 지도방법(예시) : 구두주의, 서면경고, 격리조치, 간접적 체벌, 상담지도, 특별과제부과, 징계유예 및 방과 후 봉사명령제 등

▶ **징계유예 및 방과 후 봉사명령제** : 최초 징계를 받거나, 교내봉사 수준의 징계 대상 학생  
 -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인하여 증가할 수 있는 징계 건수를 줄이고 개선의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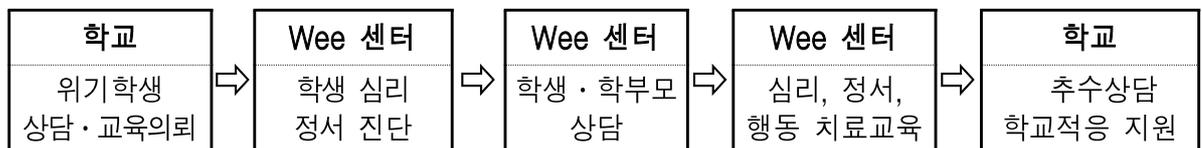
선도위원회 개최	⇒	징계 결정 유보, 교내·외 봉사활동 명령	⇒	봉사활동 이행 여부확인	⇒	이행 시 : 징계 면제 불이행 시 : 예정된 징계 부과
-------------	---	---------------------------	---	-----------------	---	-----------------------------------

\*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 사소한 위법행위도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사법원칙

## □ 문제 행동에 대한 책임지도 강화

### ○ 출석정지 도입 및 대체 교육기회 제공

-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 차원에서 출석정지 도입
  - ※ 출석정지는 현행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로,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은 징계 수위가 높아지게 됨
-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
  - ※ 출석정지 총 30일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하여 특별치료 및 대안교육 지원
-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Wee센터, Wee 스쿨과 연계하여 상담·선도 교육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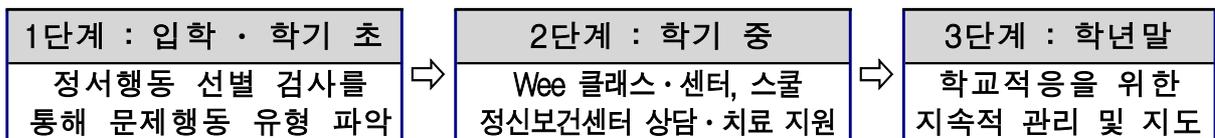
- ※ Wee 센터 :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 110개('10년) → 170개('11년)
- Wee 스쿨 :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 5개('10년) → 8개('11년)
- ※ 전문상담교사 배치 : Wee 센터와 Wee 스쿨에는 2명씩 배치, 위기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학교와 특성화고에 1명씩 연차적으로 우선 배치

○ ‘학부모 상담제’ 도입

- 학교 밖 비교육적 환경 노출의 심화로 인한 학교역할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자녀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의식 제고
  - ※ 학부모 상담제 운영 방안 관련 매뉴얼 개발·보급('11.2)
- 학부모 상담제 관련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 학교별 문제행동 조기개입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 입학·학년 초부터 우울, ADHD, 자살 징후 등 문제행동 성향 진단 및 관리



- 특별 치료가 필요한 고위기 학생과 학교부적응 학생을 구분하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지원

※ 학생정신건강서비스(정서행동 선별검사 지원) 추진 계획  
 ('09) 470교 → ('10) 1,126교 → ('11) 4,300교 → ('12) 전국 모든 초·중·고(희망학교)

□ 교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강화

○ 학생생활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 및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 강화
- 학생지도 및 상담, 학급경영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강화
- 예비 교원 양성단계에서 ‘학생지도·상담 방법’에 대한 체계적 습득을 위해 사례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
  - ※ Wee 센터에서 상담 인턴 기회 부여 및 인턴 시간을 봉사활동 및 교생 실습으로 인정 검토
- 학생생활지도 우수교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교원 인사, 해외 연수, 학습연구년제 등)

○ 자살·자해, 위험물건 소지 및 난동, 교사 폭행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

- 본청·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 콜센터」 설치 및 전담부서 지정
  - ※ 전담 변호사 지정·운영으로 법률상담·소송 지원서비스 강화 및 법률상담 이용 매뉴얼(브로셔) 제작·보급

### 3

##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

<b>실천중심의 생활예절, 언어 교육 강화</b>	+	<b>나눔 및 봉사활동 활성화</b>	+	<b>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생활 예절 교육 강화</li> <li>▪ 범사회적 언어순화운동 전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교1나눔, 멘토링 활성화</li> <li>▪ 학부모·지역사회 참여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상담·교육 확대</li> <li>▪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 운영</li> </ul>

### □ 실천중심의 생활예절 교육 강화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 및 기본 생활예절 교육 강화

- 교육과정 연계를 통하여 존중과 배려의 **‘좋은 교실문화 운동’** 추진
  - ※ 인사 잘하기, 질서 지키기, 우측보행 하기, 침·껌 뱉지 않기, 수업 중 잠자지 않기, 떠들지 않기, 지각하지 않기, 휴대폰 사용 않기 등
- 지역의 대학, 문화회관, 주민센터, 예절교육 체험센터 등과 연계한 인성교육 강화
-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 발표 대회와 연계
  - ※ 시·도교육청대회 → 전국대회(개인연구, 기관연구 구분. 출품작의 40% 장관 표창)

### □ 학생 언어 순화 교육 강화

####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언어 순화 교육 실시

- 속어·욕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캠페인 활동 등 학생 자정활동 전개
  - ※ 언어사용에 대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보급('11년 상반기)
- 휴대전화·인터넷에서 유언비어 유포, 악플달지 않기, **‘선플달기 운동’** 등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 ※ 인터넷 과다 사용 치료·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콘텐츠 제공 (<http://ethic.edunet.net>, KERIS에서 교육자료 개발·탑재)
  - ※ 선플 누리단 ‘YES’의 선플달기 캠페인(전북 ○○여고) : 지역을 순회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 전개(시민 봉사대회 대상 수상)

- 학교생활규정을 통해 상벌점제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단계부터 언어 예절 교육 조기 실시

< 학교생활에서의 욕설 사용 실태 정책연구 결과(한국교육개발원, 2010) >

- ▶ 욕설 처음 사용 시기 : 초등학교 고학년(58.2%), 초등학교 저학년(22.1%)
- ▶ 욕을 배우게 된 경로 : 친구(47.7%), 인터넷(26.4%)
- ▶ 욕설 사용 이유 : 습관이 되어서(25.7%), 남들이 사용하니까(18.2%)

○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 언어 순화 운동 전개

- 교육계, 학계,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언론·방송 등의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지원
- 청소년 언어 순화를 위한 자료 개발 및 지속적인 범국민 캠페인 운동 전개

○ 교사의 언어 표준화 자료 개발·보급

- 교사가 언어사용의 모범을 보이도록 높임말, 표준말 등의 교수언어 및 생활지도 언어 자료 개발·보급

※ 한국교육개발원(KEDI), 전국 19 ~ 65세 성인남녀 1,500명 대상, 가구방문 면접 조사결과 : 교사의 언어폭력의 심각성 : 심각함(46.5%), 보통(37.7%)

<수치심·모욕감을 유발하는 언어 사용 사례>

- ▶ 인격, 잠재력을 무시하는 말 : ‘네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 ▶ 보호자와 가족을 모욕하는 말 :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 ▶ 소수자를 놀리거나 모욕하는 말 : ‘사내자식이 하는 짓이 이게 뭐냐?’
- ▶ 신체적 특성을 놀리는 말 : ‘돼지야’, ‘똥땡아’

□ 나눔 및 봉사활동 활성화

- 학교별로 1개의 나눔 주제를 정하여 예능, 스포츠, 외국어 등 학생의 재능·특기를 나누어 주는 1교 1나눔 체험활동 권장

- 장애우 동행 문화체험, 또래 멘토링, 난치병 학생돕기 나눔콘서트,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 등

※ ○○지자체와 연계한 ○○국제중의 ‘영어나눔학교’ 운영 : 중학교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과정 운영

- 상담, 학업, 특기·재능 등을 나누는 학교내 동반성장 멘티-멘토 활성화

**< 또래 멘티-멘토 우수 사례(○○중학교) >**

자기표현이 부족하여 학교생활부적응을 겪는 학생(멘티)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학습지원이 가능한 학생(멘토)을 연결하여 따돌림 없는 학급분위기 조성, 학력 및 자존감향상, 리더십 신장 등의 성과를 얻음

○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재능 나눔 Wee 멘토」 구축·운영

- Wee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위기학생과의 1:1 멘토링 체제 구축 지원

※ 지역사회의 전문가 멘토링·상담·교육, 돌봄 및 사회복지, 의료·보건·건강, 문화·예술, 체육·기능·기술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제공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가족 봉사단’ 운영 권장

- 의무적·형식적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족 문화로 승화

※ ‘가족봉사단’ 운영(대전 ○○초등학교) :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가족봉사활동의 날’로 정하여 학생·학부모(23세대, 총 92명)가 독거노인 3세대와 결연하여 바른 인성 함양 및 공동체 의식 실천

-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자체의 ‘가족단위 봉사자 운영’ : 지역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46곳에 주말 여가 생활과 생태 환경 봉사를 결합한 형태로 가족단위 봉사자 배치·운영

□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확대**

○ 학생지도를 위한 학부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를 활용한 학기 초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14년까지 중·고등학교에 배치, ’11에는 일반고 중심으로 1,500명(국·공립 1,000명, 사립 500명) 우선 배치

※ Wee 클래스는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 (’10년) 2,530교 → (’11년) 3,530교

- 자녀와의 공감 형성을 위해 Wee클래스·Wee센터를 활용하여 심리검사 체험 등 학부모의 자녀이해 프로그램 제공

○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 운영 지원

- 학생과의 상담,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의 학교생활 지원 및 학교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의 창구로 활용
- 우수 학부모회 운영 예산 지원 : 2,792교, 100억(‘10년) → 3,200교, 106억(‘11년)

\*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 : 봉사활동, 특별교육프로그램(산행, 걷기 등)에 동행하거나 상담 등을 해주는 든든한 후견인 역할 수행

**<학생과 함께하는 아버지회 활동 사례(서울 ○○중)>**

▶ 아버지회 ‘어깨동무 산행’ 운영

- 아버지회 자녀들과 학교생활부적응 학생이 함께 떠나는 등산 활동
- 아버지들이 부적응 학생과 1대1 멘토를 맺어 조언과 선물을 주며 후원
-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및 금요일 저녁 학교주변 야간 순찰 활동 병행

V

**향후 추진 계획**

-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추진 : ‘11. 1
  - 입법예고 : ‘11. 1
  - 공포 및 시행 : ‘11. 3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매뉴얼 개발 보급 : ‘11. 2
  - 단위학교 학교생활규정 일제 정비 : ‘11. 3
- 교권보호 콜센터 설치 및 교권침해 신속대응팀 구성 : ‘11. 2

## 학교생활규정 관련 외국 사례

출처 : 해외공관 조사자료('10.11)

### □ 체벌 관련 규정

국가	허용 여부	내 용	체벌 대체 지도 방법	비 고
미국	허용 (16개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lorida, Mississippi 등 16개 州에서 <b>훈육과 질서 유지</b>를 위한 체벌 허용</li> <li>체벌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州·학군·학교 등의 규칙에 따라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eorgia : 심하지 않게 실시하고 체벌의 1차 방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학교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요청시 서면 설명서를 제공하며 의사가 정신적,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증명하면 실시하지 않음</li> </ul>	.
	금지 (34개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alifornia, Nevada 등 34개 州에서 <b>원칙적으로 체벌 금지</b></li> <li>체벌이 금지되는 경우에도 일부 州에선 무기 등 위험물건 확보, 긴박하고 심각한 신체·재산상 보호, 소요 제압, <b>수업 등 학교 질서 방해</b> 억제 등 신체적 접촉이 상황상 타당한 경우 체벌로 간주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ryland : 질서 있는 분위기 유지에 적절한 훈육 조치가 각 카운티교육위원회에 의해 허용될 수 있음</li> <li>New Jersey : 소요제압, 무기 제압 등 자기방어 또는 타인 및 재산 보호, 질서 있는 행동 유지 필요시 타당한 힘을 사용하는 것은 체벌로 간주되지 않음</li> </ul>	Idaho는 체벌관련 성문조항 없음
영국	원칙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에 대한 직원의 체벌 부여 또는 권한은 (교육을 받는 자)에게 직원의 신분으로 합당한 권리의 행사를 위한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li> <li>범죄, 신체상해 또는 재물에 해를 입히는 경우, <b>교내 또는 학교에서 질서 및 규율 유지 방해</b> 등 합리적인 상황에서 무력 사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훈계, 학부모 및 보육자에게 서신 발송, 퇴실, 소풍 또는 체육활동 참가 금지, 휴식시간 또는 점심시간 박탈, 방과 후 남기, 소지품 압수, 퇴학 등</li> </ul>	교육법, 교육 및 평가법
독일 (헤센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적 체벌이나 다른 모멸적 조치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동변화 모색 목적의 학생 면담, 훈계, 구두 또는 서면 질책, 반성을 위한 과제 부과, 수업 및 학교질서 위해(危害) 물건 잠정적 압수</li> <li>학생과 학부모의 집단 상담, 고의수업 불참 사실 부모 통보</li> </ul>	헤센주 학교법 제82조 제2항
일본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장 및 교원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청의 인정 하에 학생 및 아동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단, 체벌을 가할 수 없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성문 제출, 서약서 제출 등</li> <li>방과후 남기, 당번 많이 세우기, 학습 과제 부여</li> </ul>	학교교육법 및 학생지도제요 (문부과학성)

국 가	허용 여부	내 용	체벌 대체 지도 방법	비 고
브라질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나 선생 또는 보육원 교사가 아동의 손바닥이 뺨을 때리거나, 밀거나 꼬집거나 치거나 머리를 잡는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한군데 서있도록 하는 체벌이나 모욕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훈계 및 훈육</li> </ul>	아동체벌 금지법 (7,672/10)
카자흐스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존권, 개인적 자유, 불가침, 사생활 보장</li> <li>정부의 아동 개개인 불가침 보장 및 물리적인 보호수행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임아웃제, 학생교화 전문기관 위탁</li> </ul>	아동법 제10조
캐나다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계 방법에 체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징계 : 교사상담 → 교감, 교장 상담 → 학부모상담 → 교장 징계 결정</li> <li>중징계 : 교사상담 → 교감, 교장 상담 → 학부모상담 → Expulsion Hearing(퇴학 청문회) → 퇴학결정 → 해당학생 교육청 ACE, ACCESS 프로그램 운영 참가 → 다른 학교 편입(가능)</li> <li>※ 퇴학 청문회 구성 : 교육위원, 장학사, 해당 학교 교장, 참고인(학부모, 학생)</li> </ul>	헌법의 포괄적 인권 보호 규정
파라과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들의 인격 또는 성격 발달의 손상을 입히는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및 정신적 행위를 가하는 것을 교육자들에게 금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두경고, 서면 훈계, 정학, 오전·오후반 변경, 입학 보류 등</li> </ul>	교육관련 법령 제468조 제51항(교사의 금지사항)

## □ 학생생활규정

구분	미국 (Maryland Montgomery County)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근거	• 州 헌법 및 Board of Education 준칙	• 교육법, 교육 및 검사법	• 헤센주 학교법	• 학교교육법	• 지역 교육청 규정
제·개정 방법	• The Responsible Office에서 제·개정	• (권한) 학교운영위원회 • (공지) 학교장, 1년 1회	• (권한) 학교장 • (청문) 학부모회, 학생회 청문권 행사 가능 • (공지) 의무적 입학시 문서 공지	• 학교 자율 결정	• 각 학교 이사회 및 학부모 합의하 관련 규정 재개정
학생 징계	• 10일 이하의 정학 • 10일 이상의 정학 • 제적	• 1대1 훈계 • 퇴실 • 소풍 또는 체육활동 참가 금지 • 휴식 또는 점심시간 박탈 • 방과후 남기기 • 소지품 압수	• 남은 수업 또는 학교행사 제외 • 다른 학급 배치 경고 및 시행 • 다른 학교 전학 경고 및 시행 • 퇴학 경고 및 퇴학	• 훈고(訓告) • 유기등교정지처분 • 무기등교정지처분 • 퇴학	• 정학 • 퇴학
두발· 용의· 복장	• 학교생활에 적절한 복장과 몸차림에 관하여 권고 가능 ※ 예를 들어, 저속·음란하며 노출이 심한 경우	• 특정한 제한규정 없음 •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 두발·용의·복장 규제 없음 • 화장, 악세사리 착용 등 모두 허용 • 코프투크(이슬람 여성용 스카프) 착용 금지		• 복장 : 학생회, 학부모회, 학교 이사회에서 참여하여 복장 규정 결정 • 기타 : 제한 규정 없음
휴대폰 제한	•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 휴대폰 전원을 끈 후 사물함에 보관 ※ 초등학생, 소지 및 이용 전면금지	• 징계조치로서 휴대폰 압수 존재	• 위급사항 또는 교사 허용시만 사용가능 • 그 외에는 전원 꺼두어야 함	• 학교자율로 학생관리규칙 제정	•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 휴대폰 전원을 끈 후 사물함에 보관
기타 생활 규정	•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교장, 교감, 지명된 교사에 의해 危害 물건 수색 및 압수 가능		• 무기, 술, 마약 소지 금지 • MP3 소지 금지 • 흡연, 껌씹기 금지		

---

-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설명자료(Q&A)**

---

## 목 차

- 【문1】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는지? ..... 21
- 【문2】 학교문화 선진화 추진 배경은? ..... 21
- 【문3】 학교문화 선진화 기본 방향은? ..... 22
- 【문4】 최근 학교문화의 문제점은? ..... 22
- 【문5】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 반영 제도화란? ..... 23
- 【문6】 학칙 준수 서약식 권장 이유는? ..... 23
- 【문7】 학생 음부즈맨(Ombudsman) 제도란? ..... 24
- 【문8】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운영의 자율권이란? ..... 24
- 【문9】 리더십 함양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 25
- 【문10】 학교문화 선도학교 운영 계획은? ..... 25
- 【문11】 학생자치법정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 26
- 【문12】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이유는? ..... 26
- 【문13】 간접적 체벌이란? ..... 27
- 【문14】 간접적 체벌의 현장 정착 방안은? ..... 27
- 【문15】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이란? ..... 28
- 【문16】 출석정지를 도입한 이유는? ..... 28
- 【문17】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생이 받게 되는 대체교육은? ..... 29
- 【문18】 학부모 상담제도란? ..... 29
- 【문19】 언어순화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은? ..... 30
- 【문20】 재능 나눔 Wee 멘토의 운영 방안은? ..... 30

**【문1】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는지?**

- 지난 해,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금지 조치 이후 현장의 혼란을 극복하고,
  -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10.8.18)
      - 정책연구 책임자 : 교육법연구팀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 ※ 교원 및 학부모 단체 순회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10.9~)
    - ※ 교원, 교원단체 대표, 학부모단체 대표 연석 협의회('10.10.7)
    - ※ 학생과 교사의 권리 및 책무 신장 방안에 대한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10.12.3. '11.1.12)
    - ※ 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 관련 학교현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10.10.29)
    - ※ 학교문화 선진화 현장 전문가 TF 구성·운영('10.11~)
    - ※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10.12.29)
      -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주제 발표 :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문2】 학교문화 선진화 추진 배경은?**

- 최근 학생들의 욕설·폭력 등의 일탈 행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 가치관의 붕괴(anomie),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올바른 인성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선진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문3】 학교문화 선진화 기본 방향은?

- 학교문화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의하여 만들어 지며, 특히 학생들의 학교생활 과정이 학교 문화의 핵심이 된다.
- 학교문화 선진화의 기본방향은
  - 첫째, 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스스로 만든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 둘째, 체험과 실천 중심의 나눔과 봉사활동, 자치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며,
  - 셋째, 학생존중의 생활지도와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를 지향한다.

### 【문4】 최근 학교문화의 문제점은?

- 초고속 인터넷 활성화 이후 졸업식 알몸 뒤풀이 유행, 습관적인 욕설 사용, 학교 폭력의 저연령화 등 불건전한 학생문화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모바일 기기로 대표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학생들의 문화와, 기성세대인 교사의 지도 방식 사이에 소통 단절 및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생활지도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학생지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문5】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 반영 제도화란?

-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학칙을 제정·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 수렴 의무화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반영된다.
    - 학생들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미흡할 경우 학칙을 경시하는 풍조가 조장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역량도 향상될 수 없다.
  -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학교별로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 설문조사 및 학생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학칙 제·개정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등
-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및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11.2)

### 【문6】 학칙 준수 서약식 권장 이유는?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입학식에서 학칙 준수에 대해 서명 또는 선서 등을 통하여 책임감을 심어 준다.
  - 학칙 준수 서약식은 학생·학부모·교원 모두 학칙에 따라 서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학칙이 중심이 되는 학교전통을 확립해 나갈 뿐만 아니라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공공 의식, 준법 의식 등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문7】 학생 ombudsman(Ombudsman) 제도란?

- 학생 ombudsman이란 학교별 학생 고충 접수·해결을 위하여 구성된 학교생활 학생 모니터단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제도를 통해서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학교 만족도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자치활동 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문8】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운영의 자율권이란?

- 학생자치활동 단위 별(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로 신청한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편성하고
  - 해당 자치활동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을 담당교사의 지도 하에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자치활동을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문9】 리더십 함양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 학교 리더십 교육은 학급 회장 및 부회장, 학생회 간부 등 특정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향이 있다.
  -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 단위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리더십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 리더십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수 시간과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10】 학교문화 선도학교 운영 계획은?**

- 지난 해 학교행사(졸업식, 학교축제 등)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학교문화 선도 150교를 선정하여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도에는 300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 학교문화 선도학교는 학교행사뿐만 아니라, 학생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언어순화 활동, 학칙준수 관련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 학생과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 교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일반학교에 확산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11】 학생자치법정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판사·검사·변호사의 역할**을 맡아 학생 사안을 처리하는 일종의 자치활동 제도이다.
  - 학생자치법정에서는 학칙 위반 학생 중 **변론이 필요한 경우**나 교내봉사 수준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참여하며, 프로그램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 이 제도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경험하고, **준법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문12】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이유는?**

- 학칙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을 규정하는 자치규범의 성격**을 지니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문화와 전통이 만들어 진다.
- 학교가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학교여건을 반영**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학칙 자율권을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 대체지도 방법, 두발·복장, 휴대전화, 학생 소지품** 등과 관련하여
  - 교육당국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학교급별, 학교 특색을 반영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무성도 함께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문13】 간접적 체벌이란?

-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거나 반복적·지속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이나 학생의 인격을 손상하는 지도방법은 금지된다.
  - 간접적 체벌은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와 같은 훈육·훈계의 수준에서 실시되는 교육적 벌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육적 체벌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은 학교급별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 ※ 교육적 훈육·훈계 : 구두주의, 서면경고, 간접적 체벌, 격리조치, 특별과제 부과 등

### 【문14】 간접적 체벌의 현장 정착 방안은?

- 교육적인 훈육인 간접적 체벌을 교육당국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 직접적인 체벌을 금지하는 만큼, 교육적 훈육 차원의 간접적 체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선 학교나 학부모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리라고 보고
  -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감안하여 간접적 체벌이 교육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자료 개발, 교원연수 등의 현장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간접적 체벌이 현장에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 법령이 개정되면 일부 교육청에서도 체벌금지 조치를 수정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15】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이란?**

- 그 동안 학생 지도시, 별도의 규정없이 교사의 자의적인 지도가 이루어져, 간혹 학생과의 갈등 발생 등 부작용이 초래되곤 하였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사 간 지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훈계·훈육의 지도방식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 예를 들면, 구두주의, 서면경고, 간접적 체벌, 교사에게 편지 쓰기, 격리·별도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문16】 ‘출석정지’를 도입한 이유는?**

- 교사지도 불응, 교내폭력 행사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에 대한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 학교부적응 등의 고충을 겪는 학생에게 별도의 치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출석정지가 도입된다.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출석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기록되어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로 제한하여, 징벌의 남용을 예방하고, 학생의 조기 학교복귀를 돕도록 하였다.
  - 출석정지 30일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계속한다면, 학부모와 상담 후, 특별 치료를 실시하거나 대안교육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문17】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생이 받게 되는 대체교육은?**

-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은,
  - 정부가 지원하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Wee센터나 Wee스쿨에서 단기간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받게 된다.
  - Wee센터와 Wee스쿨에는 전문상담교사를 비롯하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게임치료사 등 상담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 학생의 심리 및 행동 치료, 가족동반 활동, 부모교육 등 인성 및 학교적응 교육을 실시 등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문18】 ‘학부모 상담제도’란?**

- 학부모 상담제도란, 학교규범을 위반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부모가 참여하여 학교지도에 협조해야 한다는 권고적 의미를 갖는다.
- 이는 학생지도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가정에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다.
  - ※ 학부모 상담 절차 매뉴얼 개발·보급 ('11.2)
- 일부에서 거론되는 **학부모 소환제**는 맞벌이, 가정해체 등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국가와 학교가 책임지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문19】 언어순화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은?**

-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형성하고, 그 사고가 행동을 낳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청소년의 막말은 개인의 인성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언어순화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바른 말, 표준말 사용을 지도하고, 인터넷 사용 언어에 대한 순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학부모 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언어순화 캠페인을 범사회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20】 재능 나눔 Wee 멘토의 운영 방안은?**

- 현재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에 Wee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 Wee 센터 구축 현황 : ('10) 110개 → ('11) 170개 예정
- Wee 센터에서 위기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학교적응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의 위기 수준 및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 Wee 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1:1 멘토링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1. 제안이유

학생의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학생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훈계·훈육의 지도방법을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 학생의 권리와 한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고자 함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업운영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나.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동안 상담·선도의 교육적 조치 의무화를 명시함(안 제31조 제1, 3, 5, 6항)

- 다.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훈계·훈육의 구체적인 지도방법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 제7항)
- 라. 학생의 학습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며,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 권리의 행사 범위를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 마. 학교현장에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제3항)

###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1. 1  
3) 규제심사 : 2011. 2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7호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를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련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제7호의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 제1항의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1호와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
5.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호,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내의 봉사
3. 사회봉사
4. 특별교육이수
6. 퇴학처분

제31조 제3항 및 5항, 6항, 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상담·선도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개별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출석정지 기간은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당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지도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되,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법 제18조의4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①(생략)</p> <p>7. <u>학생포상 및 학생징계</u></p> <p>&lt;신설&gt;</p> <p>제31조(학생의 징계 등)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내의 봉사</li> <li>2. 사회봉사</li> <li>3. 특별교육이수</li> <li>4. 퇴학처분</li> </ol> <p>③ <u>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①(현행과 같음)</p> <p>7. <u>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이외의 기타 지도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련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u></p> <p>④ <u>제1항 제7호의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제31조(학생의 징계 등)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u></li> <li>2. 학교내의 봉사</li> <li>3. 사회봉사</li> <li>4. 특별교육이수</li> <li>5. <u>10일 이내의 출석정지</u></li> <li>6. 퇴학처분</li> </ol> <p>③ <u>교육감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상담·선도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개별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u></p>

- 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신 설>

출석정지 기간은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당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지도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되,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5(학생의 권리보장 지원)

- ①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법 제18조4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③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③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생활문화팀 평생직업교육국 이러닝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867 (02) 2100 - 6421